

종 법(宗法)

승려법

제1조 종헌 제97조에 의하여 승려의 자격분향유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승려가 성직자로서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교화중생의 승가사명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종의 승려는 종단의 공인 계단에서 득도계 또는 대상계를 수지하고 본종소정의 절차를 밟아 승적을 취득한 후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불교에 전념하는 승려를 말한다.

제3조 1. 본종의 승려는 득도계 및 대승계를 수지하고 삭발염의한 자, 의식을 집전하는 자, 사찰에 거주하며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자, 종단 공직에 봉사하는 자, 유발득도 후 포교사업에 전념하는 자 등 형의와 근기에 의하여 수행승 교화승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본종의 승려로서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직과 포교에 전념하는 자는 유발할 수 있다.

제4조 타 종단에 등록된 승려가 본종단에 입종을 원할시는 필히 탈종공고를 불교신문에 게시하고 입종계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